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1조 2,219억 4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24조 1,334억 8천 6백만원
- 실제수납액 : 23조 153억 4천 8백만원
- 결손처분액 : 3,494억 6천 6백만원
- 미수납액 : 7,686억 7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5.4%(전년도 94.2%)임.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합계	21,221,943	24,133,486	23,015,348	349,466	768,672	108.5	95.4
지방세 합계	18,221,310	21,550,441	20,458,073	348,605	743,763	112.3	94.9
보통세	16,295,382	18,639,026	18,378,785	33,032	227,209	112.8	98.6
취득세	4,273,788	5,600,707	5,590,806	891	9,010	130.8	99.8
주민세	544,955	586,765	579,017	1,639	9,109	106.3	98.7
재산세	2,615,116	2,870,159	2,841,096	1,210	27,853	108.6	99.0
자동차세	1,132,092	1,002,807	940,103	2,068	60,636	83.0	93.7
러저세	131,021	128,188	128,188	-	-	97.8	100.0
담배소비세	565,175	565,435	565,435	-	-	100.0	100.0
지방소비세	1,794,673	1,928,261	1,928,261	-	-	107.4	100.0
지방소득세	5,238,562	5,956,701	5,805,876	27,224	123,601	110.8	97.5

구분	예산현액 (A)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차분 (D)	마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장수율 (C/B)
목적세	1,704,361	1,881,006	1,852,967	1,360	26,680	108.7	98.5
지역자원시설세	284,868	291,374	289,260	160	1,955	101.5	99.3
지방교육세	1,419,493	1,589,632	1,563,707	1,200	24,725	110.2	98.4
지난년도시세	221,567	1,030,407	226,319	314,213	489,875	102.1	22.0
지난년도수입	221,567	1,030,407	226,319	314,213	489,875	102.1	22.0
세외수입(계)	640,701	223,113	197,343	862	24,909	30.8	88.4
경상적세외수입	58,384	69,451	57,292	-	12,159	98.1	82.5
공유재산임대료	12,187	14,399	2,320	-	12,079	19.0	16.1
기타사용료	2,091	2,233	2,153	-	79	103.0	96.4
증자수입	725	870	870	-	-	120.0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39,200	49,135	49,135	-	-	125.3	100.0
기타이자수입	4,178	2,812	2,812	-	-	67.3	100.0
임시적세외수입	582,316	153,662	140,050	862	12,750	24.1	91.1
공유재산매각수입	472,985	31,941	29,974	-	1,967	6.3	93.8
변상금	512	1,112	679	-	433	132.6	61.1
위약금	165	78	76	-	2	46.1	97.4
기타수입	106,676	108,040	107,933	-	107	101.2	99.9
지난연도수입	1,976	12,489	1,386	862	10,241	70.1	11.1
보조금(계)	1,789	1,789	1,789	-	-	100.0	100.0
국고보조금	1,789	1,789	1,789	-	-	100.0	1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41,910	2,358,143	2,358,143	-	-	110.1	100.0
잉여금	2,141,910	2,141,910	2,141,910	-	-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	216,233	216,233	-	-	110.1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2조 5,251억 1천 9백만원
- 예산증감 : 3억 원
- 예산현액 : 2조 5,254억 1천 9백만원
- 지출액 : 2조 4,850억 6천 8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403억 5천 1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전년도 2.0%)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전년도 2.0%)가 발생
- 불용액 403억 5천 1백만원 전액 예산집행잔액임(불용액의 85.8%인 346억 2천만원이 통합인건비 불용액임)
※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통합인건비 예산 7,349억 3천 5백만원 중 지출액 7,002억 5천 9백만원, 집행잔액 346억 7천만원(불용률 4.7%)

< 2019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2,525,419	2,485,068	-	40,351	1.6%
사업예산계	2,523,428	2,483,123	-	40,305	1.6%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741,537	703,693	-	37,844	5.1%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388	2,284	-	1,104	32.6%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0	90	-	-	0.0%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335,832	1,335,830	-	2	0.0%
시세입 목표달성	434,985	433,810	-	1,175	0.3%
조세정의 실현	7,596	7,416	-	180	2.4%
일반예산계	736,925	702,204	-	34,721	4.7%
기본경비	1,990	1,945	-	45	2.3%
인력운영비	734,935	700,259	-	34,676	4.7%

〈 2019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재무국	2,525,419	2,485,068	-	40,351	1.6%
재무과	743,077	705,188	-	37,889	5.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54	1,032	-	22	2.1%
2018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2	202	-	30	12.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	40	-	-	-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337	-	-	337	100.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4,395	1,666	-	2,729	62.1%
손해배상금 지급	300	300	-	-	-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	20	-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16	90	-	26	22.4%
서울계약담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업무 추진	107	84	-	24	22.4%
기본경비	1,540	1,495	-	45	2.9%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34,995	700,259	-	34,676	4.7%
자산관리과	3,432	2,328	-	1,104	32.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	589	-	111	15.9%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617	1,626	-	991	37.9%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1	69	-	2	2.8%
기본경비	44	44	-	-	-
계약심사과	158	158	-	-	-
계약심사 업무추진	54	54	-	-	-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6	36	-	-	-
기본경비	68	68	-	-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세제과	1,335,954	1,335,952	-	2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2	110	-	2	1.8%
마을세무사 운영	25	25	-	-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	-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789	1789	-	-	-
기본경비	122	122	-	-	-
재정보전금	1,331,649	1,331,649	-	-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247	2,247	-	-	-
세무과	435,126	433,951	-	1,175	0.3%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장수 납세조합 보조	547	227	-	320	58.5%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01	700	-	101	12.6%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79	156	-	22	12.3%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3	190	-	2	1.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543	543	-	-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	-	-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	102	-	28	21.5%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	-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02	1,590	-	12	0.7%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23	21	-	2	8.7%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664	-	-	664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43	819	-	24	2.8%
기본경비	141	141	-	-	-
시세 징수교부금	424,431	424,431	-	-	-
38세금징수과	7,671	7491	-	180	2.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2	2,052	-	171	7.7%
자동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084	5,084	-	-	-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1	11	-	-	-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79	270	-	9	3.2%
기본경비	75	75	-	-	-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인상으로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의 상여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성과상여금)에서 5억원을 전용(2건)
-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 및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직급보조비)에서 13억 7천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본청 및 사업소의 임기제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기타직보수 지급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기타직보수)에서 47억 5천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본인인증건수 확대로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상시세금납부치제구축」 (공공운영비 ⇒ 사무관리비)에서 6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15년 사망한 직원 유가족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금 지급 으로 3억원 지급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9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 조사’ 1개 사업에 17억 8천 8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

3. 기금결산 : 재무국 소관 기금 없음.

4. 채권현재액 : 붙임자료 참조

5. 채무결산 : 붙임자료 참조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04,718천 m^2 73조 867억원,
 - 건물 10,897천 m^2 6조 9,672억원,
 - 기타 14,683,203건 41조 2,947억원
- 총 121조 3,486억원 상당의 금액

〈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17,492,828	5,593,753	1,737,935	121,348,647	
행정 재산	계	98,351,604	4,614,239	1,679,758	101,286,086
	공용재산	9,816,820	1,251,573	27,237	11,041,156
	공공용재산	77,150,975	2,897,086	1,485,335	78,562,726
	기업용재산	9,884,902	369,533	162,871	10,091,564
	보존재산	1,498,907	96,048	4,315	1,590,640
일반재산	19,141,224	979,514	58,177	20,062,561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은 36개,
현재액은 1억 1천 6백만원임.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8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 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6	-	-	-	-	-	-	36
	금액	116	-	-	-	-	-	-	116
일반회계	수량	36	-	-	-	-	-	-	36
	금액	116	-	-	-	-	-	-	116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참고)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 **시세입 결산 실적 : 41조 6,748억원**(예산현액 대비 103.9%)

○ 일반회계 : **28조 9,755억원 징수**(예산현액 27조 1,348억원의 106.3%)

- 지방세 : 결산액 20조 4,581억원(예산 18조 2,213억원 대비 112.3%)

- 세외수입 : 결산액 1조 134억원(예산 1조 3,655억원 대비 74.2%)

- 지방교부세 : 결산액 2,003억원(예산 1,991억원 대비 100.6%)

- 보조금 : 결산액 4조 5,532억원(예산 4조 6,135억원 대비 98.7%)

- 보전수입 등: 결산액 2조 7,506억원(예산 2조 7,353억원 대비 100.6%)

○ 특별회계 : **12조 6,993억원 징수**(예산현액 12조 9,600억원의 98.0%)

- 공기업 : 결산액 2조 2,504억원(예산 2조 2,292억원 대비 100.9%)

- 기타 : 결산액 10조 4,489억원(예산 10조 7,308억원 대비 97.4%)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실제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2018년 결산(C)	증감액 (B-C)
			차액 (B-A)	비율 (B/A)		
합계	40조 948	41조 6,748	1조 5,800	103.9%	38조 1,121	3조 5,627
일반회계	27조 1,348	28조 9,755	1조 8,407	106.8%	27조 948	1조 8,807
지방세수입	18조 2,213	20조 4,581	2조 2,368	112.3%	19조 1,033	1조 3,548
세외수입	1조 3,655	1조 134	△3,521	74.2%	1조 1,528	13,548
지방교부세	1,991	2,003	12	100.6%	1,850	153
보조금	4조 6,135	4조 5,531	△604	98.7%	3조 6,120	9,411
보전수입 등	2조 7,354	2조 7,506	152	100.6%	3조 417	△2,911
특별회계	12조 9,600	12조 6,993	△2,607	98.0%	11조 173	1조 6,822
공기업특별회계	2조 2,292	2조 2,504	212	100.9%	2조 379	2,125
기타특별회계	10조 7,308	10조 4,489	△2,819	97.4%	8조 9,794	1조 4,695

가.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

-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1조 2,219억원) 대비 8.5%(1조 7,934억원) 초과 수납된 23조 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1조 422억원) 증가한 수준임.
- ※ 2018회계연도 결산액은 예산현액(20조 3,454억원) 대비 8.0%(1조 6,277억원) 초과 수납된 21조 9,731억원임.
- 반면, 징수결정액(24조 1,335억원) 대비 결산액(21조 9,731억원)은 4.6%(1조 1,181억원) 부족 징수되어 결손처분액(3,486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687억원에 달하고 있음.
- ※ 2018회계연도 결산액은 징수결정액(23조 3,294억원) 대비 결산액(21조 9,731억원) 대비 5.8%(1조 3,563억원) 부족 징수되어 결손처분액(4,148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9,415억원임.
- 이와 같은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와 미수납액 발생은 재무국의 고질적인 결산 형태로서, 매년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고액의 미수납액(체납액) 발생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9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1,221,943	23,015,348	1,793,405	108.5%	21,973,104	1,042,244	104.7%
지방세 수입	18,221,310	20,458,073	2,236,763	112.3%	19,103,261	1,354,812	107.1%
세 외 수 입	640,701	197,343	-443,358	30.8%	229,019	-31,676	86.2%
보 조 금	1,789	1,789	0	100.0%	1,823	-34	98.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58,143	2,358,143	1,793,405	108.5%	2,639,001	1,042,244	104.7%

〈2019회계연도 재무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무국)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예산액
재무국	21,005,710	21,221,943	24,133,486	23,015,348	349,466	768,673	95.3	20,137,778
재무과	2,286,401	2,502,634	2,513,602	2,513,221	0	381	99.9	2,503,231
자산관리과	489,727	489,727	61,570	36,489	763	24,318	59.2	529,374
계약심사과	-	-	-	-	-	-	-	-
세제과	3,035	3,035	3,846	3,730	87	28	96.9	3,055
세무과	18,226,542	18,226,542	20,942,022	20,414,508	93,817	433,697	97.4	17,102,114
38세금징수과	5	5	612,446	47,399	254,799	310,248	7.7	4

나. 지방세수입 결산(20조 4,581억원)

- 2019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8조 2,213억원) 대비 12.3%(2조 2,368억원) 초과 수납된 20조 4,581억원으로 전년(19조 1,033억원) 대비 7.1%(1조 3,548억원) 증가한 수준임.

※ 2018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조 68억원(11.7%) 초과 징수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82,213	204,581	22,368	112.3	191,033	13,548	107.1
취득세	42,738	55,908	13,170	130.8	51,917	3,991	107.7
지방소득세	52,386	58,059	5,673	110.8	54,943	3,116	105.7
재산세	26,151	28,411	2,260	108.6	24,980	3,431	113.7
지방소비세	17,946	19,283	1,337	107.5	13,991	5,292	137.8
주민세등	42,992	42,920	-72	99.8	45,202	-2,282	95.0

- 초과 징수된 주요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이며, 부족 징수 세목은 레저세, 자동차세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매년 10%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매년 경제성장률과 부동산가격, 주요 경기 동향 등 변수를 예측하여 추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2조 2,368억원(12.3%)의 지방세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한 데에 기인한다 하겠음.

- 이는 필요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산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로써,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어 서울시 재정운용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재무국의 각성과 함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19	182,213 (전년대비6.6%증)	182,213	204,581	22,368	12.3
2018	170,965 (전년대비9.9%증)	170,965	191,033	20,068	11.7
2017	155,554 (전년대비10.1%증)	155,554	178,171	22,617	14.5

※ 2020년 지방세수입 당초 예산편성액 : 19조 5,524억원 ('19년 대비 1조 3,311억원, 7.3% 증액)

① 취득세

- 취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4조 2,738억원) 대비 30.8%(1조 3,170억원) 초과 수납된 5조 5,908억원으로 전년(5조 1,917억원) 대비 7.7%(3,991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 중 예산대비 결산을 차이가 전년도에 이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세목임.

< 취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42,738	55,908	13,170	130.8	51,917	3,991	107.7
부 동 산	36,160	49,372	13,212	136.5	45,395	3,977	108.8
차 량	6,578	6,536	-42	99.4	6,522	14	100.2

<최근 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19	42,738	42,738	55,908	13,170	130.8
2018	43,946	43,946	51,917	7,971	118.1
2017	40,070	40,070	52,952	12,882	132.1

< 최근5년간 취득세 세입액 증감 >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득세	45,276	48,921	52,952	51,917	55,908
증가율	36.7	8.1	8.2	△2.0	7.7

- 재무국은 취득세 초과 징수의 사유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 취득세 세율 누진구간 중 최고세율(3%) 적용 대상 거래의 증가를 들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만을 예측하였을 뿐 거래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를 도외시 한 것에 따른 것으로, 결국 취득세 세입추계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추계 오류의 결과라고 할 것임.

※ 거래량: 435천건('18년) → 368천건('19년)으로 △16% 감소

※ 서울아파트 중위 거래가격: 84,502만원('18년) → 89,751만원('19년)으로 6.2% 증가

<최근 3년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부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가격구간	적용 세율	2017			2018			2019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6억 이하	1%	162,569	6,035	30%	135,319	4,973	24%	94,304	3,394	18%
6억 초과 ~ 9억 이하	2%	31,793	4,921	24%	31,178	4,830	23%	25,067	3,855	21%
9억 초과 ~ 15억 이하	3%	15,492	5,587	28%	16,259	5,818	28%	15,272	5,490	30%
15억 초과		5,469	3,708	18%	7,673	4,989	24%	8,791	5,695	31%
합계		215,323	20,251	100%	190,429	20,610	100%	143,434	18,434	100%

※ 점유비: 연간 세액 합계 대비 서울별 세액 점유비 / 자료출처: 세무종합시스템 주택 세율 신고자료

<최근 5년 간 취득세 징수액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45,276	48,921	52,952	51,917	55,908
(증가율)	36.7	8.1	8.2	-2.0	7.7
부동산	39,417	42,698	47,756	45,395	49,372
(증가율)	38.7	8.3	11.8	-4.9	8.8
차량	5,859	6,223	5,196	6,523	6,536
(증가율)	25.1	6.2	-16.5	25.5	0.2

- ※ '19년 거래 건당 취득세 50억원 이상 고액부동산 거래는 50건 5,399억원으로 전년(37건 4,513억원) 대비 13건 886억원 증가
- ※ 국산 승용차 취득은 감소(△3만5천대)하였으나, SUV등 레저용 차량과 외국산 승용차는 4만7천대 증가

<서울시 자동차 등록 증감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산	외산	SUV등			
2019년(A)	3,124,157	1,550,167	395,481	725,155	114,310	330,840	8,204
2018년(B)	3,124,651	1,585,570	372,488	700,579	120,780	337,241	7,993
증감(A-B)	-494	-35,403	22,993	24,576	-6,470	-6,401	211

※ 자료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차종별)

②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7,947억원) 대비 7.4%(1,336억원) 초과 수납된 1조 9,283억원으로 전년(1조 3,991억원) 대비 37.8%(5,392억원) 증가한 수준임.

<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7,946	19,283	1,337	107.5	13,991	5,292	137.8
소비지출분 (9 %)	9,933	10,709	776	107.8	5,715	4,994	187.4
취득세보전분 (6 %)	8,013	8,574	561	107.0	8,276	298	103.6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 소비 지출분(9%)과 취득세 보전분(6%)으로 구분되며, 전년 대비 세입 결산액이 37.8%(5,392억원)로 크게 증가된 주된 사유는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방안의 제1단계*로 지방소비세 소비지출분 세율을 인상(4%↑, 5%→9%)함에 따른 것임.

* 1단계: 2019년 지방소비세(소비지출분) 4%p 인상에 따라 세목 총 세율은 15%
2단계: 2020년 지방소비세(소비지출분) 6%p 추가 인상하여 세목 총 세율은 21%

○ 2020년도의 경우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2단계 세율이 추가 인상(6%)되어 세율이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총 21%까지 인상된바 있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국세) 부가가치세 79%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구분	안분방식				
6%p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	취득세 감소비율	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 시·도 몫 시·군·구 몫		보통교부금 배분비율(20.27%)
5%p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시·도】 지방소비세				
10%p	①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② 재정조정분(0.9조/정액)		③ 잔여분
	시·도 (약2.8조)	시·군·구 (약0.8조)	조정교부금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 다만,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해당 전환사업비 충당을 위해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인상분(2019~2020년, 10%) 중에서 4.5조원을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교부(예정)하고 있음.

※ 2020년 지방소비세 명목상 세율은 21%이나, 실질 세율은 16.1%로 예상

○ 반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긴급 수요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자치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③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5조 2,386억원) 대비 10.8%(5,673억원) 초과 수납된 5조 9,567억원으로 전년(5조 4,943억원) 대비 5.7%(3,116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지방세수입 중 세입 규모가 가장 큰 세목임.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52,386	58,059	5,673	110.8	54,943	3,116	105.7
종합소득분	7,054	7,801	747	110.6	7,254	547	107.5
양도소득분	4,893	6,490	1,597	132.6	7,358	-868	88.2
법인소득분	19,444	18,905	-539	97.2	17,707	1,198	106.8
특별징수분	20,995	24,863	3,868	118.4	22,624	2,239	109.9

○ 지방소득세 세세목별 결산 실적을 보면, 사업자 등록 증가 등에 따른 종합소득분(10.6%, 747억원)과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양도소득분(32.6%, 1,597억원),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18.4%, 3,868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 되었으나, 법인세분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산업 불황, 수출 둔화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1조 9444억원) 대비 2.8%(539억원) 부족 징수되어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수출 등 기업 실적 동향 및 법인세 예산 편성 규모 등 종합적인 세수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사업자등록 : ('17년) 1,345천건 → ('18년) 1,427천건으로 6% ↑
- ※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상승률 : 3.9%↑('18년 356만원 → '19년 370만원)
- ※ 매매가격 : ('18년) 84,502만원 → ('19년) 89,751만원 6.2%↑
- ※ 상용근로자 수 : ('18년) 2,689천명 → ('19년) 2,840천명 5.6%↑
- ※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 ('18년) 356만원 → ('19년) 370만원 3.9%↑
- ※ 수출 증가율: ('18년) 3.5% → ('19년) 1.5% △2.0P ↓
- ※ 3분기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 ('18년) 134조 → ('19년) 82조 △39% ↓

④ 재산세

- 재산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6,151억원) 대비 8.6%(2,260억원) 초과 수납된 2조 8,411억원으로 전년(2조 4,980억원) 대비 13.7%(3,431억원) 증가한 수준임.
- 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세입(1조 3424억원)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공동재산세전출금)의 재원임.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26,151	28,411	2,260	108.6	24,980	3,431	113.7
특별시분	12,120	13,424	1,304	110.8	11,697	1,727	114.8
도시지역분	14,031	14,987	956	106.8	13,283	1,704	112.8

<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교부 현황_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교부액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933,536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8.6%, 2,260억원)이 발생하였음.

< 2019년 공시가격 인상을 현황 > (단위 : %)

연도	주택			건물	토지
	평균	단독	공동		
2019	13.99	13.95	14.02	2.90	12.07
2018	8.76	7.32	10.19	2.99	6.84

※ 추계 적용비율 : 공동주택(7.16%), 단독주택(4.85%), 건물(1.55%), 토지(4.67%)

※ 본 재산세 세입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제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제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재원임.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매년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를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결산률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무국의 각성이 필요하다 할 것임.

<최근 3년간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2017	21,664	21,664	22,883	1,219	105.6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 지 : 시가표준액의 70% • 건 물 :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⑤ 세입결손 지방세(레저세, 자동차세)

○ 지방세수입 중 예산현액 대비 부족 징수로 인한 세입결손 발생 세목은 자동차세와 레저세임.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1,321억원) 대비 1,920억원(17.0%) 부족 징수된 9,401억원으로 전년(1조 2,756억원) 대비 26.3%(3,355억원) 감소한 수준임.

< 자동차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1,321	9,401	-1,920	83.0	12,756	-3,355	73.7
소 유 분	6,231	6,022	-209	96.6	5,940	82	101.4
주 행 분	5,090	3,379	-1,711	66.4	6,816	-3,437	49.6

○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되며,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세목이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동차세 중 소유분의 경우 예년과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예산현액(6,231억원) 대비 209억원 (3.4%)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 결산액은 전년 대비 1.4%(82억원) 증가

< 서울시 자동차 등록 추이 > (단위 : 대수)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등록 대수	3,124,157	3,124,651	3,116,256	3,083,007	3,045,442
(증 감 률)	100.0	100.3	101.1	101.2	101.6
자동차세	6,022	5,940	5,924	5,752	5,555
(증 감 률)	101.4%	100.3%	103.0%	103.6%	96.7%

< 자동차세 소유분 결산 추이 > (단위 : 대수)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	징수액	602,174	593,961	592,390	575,204	555,510	539,578
	증감률	101.38	100.27	102.99	103.55	102.95	101.73

- 한편, 자동차세 선납(연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019년도 자동차세 소유분은 10% 세액감면액이 285억원이 발생하여 결산액 세입 결손에 일조하고 있는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면율의 축소 등 제도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동차세 연납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연납전세액(A)	연납세액(B)	감면추계액(A-B)
2018	1,169,543	276,180	248,561	27,619
2019	1,175,352	285,269	256,742	28,527
증가율	100.5	103.3	103.3	103.3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 주행분의 경우 2018년도에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과다 교부 사유로 2019년도 부터 순차적으로 안분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예산 현액(5,090억원) 대비 1,711억원(33.6%)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하여 자동차세 보전분은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교부.

-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경우 2018년 과다 교부액을 순차 정산하여 감소

㉠ 레저세

○ 레저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310억원) 대비 28억원(2.2%) 부족 징수된 1,282억원으로 전년(1,352억원) 대비 5.2%(7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용산구 소재 경마 장외발매소의 폐업(2018년) 이후 세입은 감소추세에 있음.

< 자동차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310	1,282	-28	97.9	1,352	-70	94.8
경 마	866	872	6	100.7	903	-31	96.6
경 료	340	305	-35	89.7	340	-35	89.7
경 정	104	105	1	101.0	109	-4	96.3

※ 주행 '18년 1월 용산구 장외발매소 폐업 이후 세입 감소 추세

- ('17년) 1,409억원 → ('18년) 1,352억원 → ('19년) 1,310억원

※ 한국마사회도 입장객 감소, 매출정체 등으로 '19년 예산 감축 편성

- 매출예산: ('18년) 7조 8,122억원 → ('19년) 7조 6,609억원 △1,513억원(△1.9%) ↓ 감소

<최근 3년간 레저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19	1,310	1,310	1,282	-28	97.9
2018	1,321	1,321	1,352	31	102.3
2017	1,268	1,268	1,409	141	111.1

○ 지방세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과소 징수될 경우, 「지방재정법」 상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입 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교육재정보전금 환수 등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국의 과학적인 세입 추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⑥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216억원) 대비 2.1%(48억원) 초과 징수된 2,263억원으로 전년(2,003억원) 대비 13.0%(26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2016년도 이후 3년만에 세입목표를 달성 하였음.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예산대비		2018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지난연도시세	2,216	2,263	47	102.1	2,003	260	113.0

○ 재무국은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초과 징수 사유로 법인·고액체납자·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와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재산추적, 타 기관과의 합동 체납처분 활동 등을 들고 있음.

○ 다만, 2019년 초과 세입은 47억원(2.1%)인데 반해 소제기를 통한 단일 징수건으로 161억원(자치구세 포함)을 징수하였는바, 이 징수실적이 세입 목표 초과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예년과 다르게 시세 체납 징수활동이 전반적인 활성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음.

※ '19년 12월 (주)우리강남PFV 신탁재산 취득세·재산세 161억원 징수(단일건 역대 최고)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19	2,216	2,216	2,263	47	102.1
2018	2,366	2,366	2,003	-363	84.7
2017	2,333	2,333	2,094	-239	89.8
2016	2,253	2,253	2,374	-239	98.5
2015	1,825	1,825	1,797	-239	98.5

※ 2019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1.96%임

- 징수 포상금(2018년 예산액 22억원)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 대비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감액 (B-A)	증감률 (B/A)	계	시	자치구
2019	221,567	226,319	4,752	2.1	2,049	487	1,562
2018	236,597	200,326	-36,271	-15.3	1,977	399	1,578
2017	233,297	209,404	-23,893	-10.2	2,058	412	1,646
2016	225,248	237,357	12,109	5.4	2,326	394	1,932
2015	1,825	1,797	-28	-1.5	2,480	488	1,992

- 시세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실적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1조 305억원) 대비 결산액은 22.0%(2,263억원)에 그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경우 징수결정액(6,749억원) 대비 8.7%(587억원) 징수에 그치고 있는 반면, 총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4946억원) 중 74.4%

(3,6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난연도 시세 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10,305	752	168	6,749	1,213	0	406	386	80	551
수납액	2,263	221	60	587	699	0	176	190	32	298
결손액	3,096	179	29	2,484	125	0	153	46	9	71
미수납액	4,946	352	79	3,678	389	0	77	150	39	182
징수율	22.0	29.4	35.7	8.7	57.6	0	43.3	49.2	40.0	54.1
결손율	30.0	23.8	17.3	36.8	10.3	0	37.7	11.9	11.3	12.9
미수납율	48.0	46.8	47.0	54.5	32.1	0	19.0	38.9	48.8	33.0

다. 세외수입 결산(1,973억원)

① 과다한 세입예산 결손 발생

-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407억원) 대비 30.8%(1,973억원) 징수된 1,973억원으로 전년 결산액(2,290억원) 대비 13.8% (317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4,434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 징수결정액(2,231억원) 대비 징수율은 88.4%(1,973억원)로 결손처분액(8.6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49억원이며, 전년(94.9%) 대비 6.5% 감소한 수준임.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 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 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D)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 수입	640,701	223,113	197,343	862	24,908	30.8	88.4

-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세입 과목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6.1%)’, ‘재산매각수입(6.3%)’, ‘지난연도수입’(73.1%)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외수입 예산 대비 수납률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640,701	223,113	197,343	862	24,909	30.8	88.4%
경상적세외수입	58,384	69,451	57,293	0	12,159	98.1	82.5%
재산임대수입	12,187	14,399	2,321	0	12,079	19.0	16.1%
공유재산임대료	12,187	14,399	2,321	0	12,079	19.0	16.1%
이지수입	3,148	1,452	1,452	0	0	46.1	100.0%
기타이지수입	3,148	1,452	1,452	0	0	46.1	100.0%
임시적세외수입	582,317	153,662	140,051	862	12,750	24.1	91.1%
재산매각수입	472,986	31,941	29,975	0	1,967	6.3	93.8%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72,986	31,941	29,975	0	1,967	6.3	88.4%
지난연도수입	1,976	12,489	1,386	862	10,241	70.1	11.1%

② 재산임대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은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대부자에 대한 ‘대부료’로, 2019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22억원) 대비 19.0% 징수된 23억원으로 전년 결산액(118억원) 대비 80.5%(95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99억원(81.0%)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공유재산임대료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40,701	223,113	197,343	862	24,909	30.8
경상적세외수입	58,384	69,451	57,293	0	12,159	98.1
재산임대수입	12,187	14,399	2,321	0	12,079	19.0
공유재산임대료	12,187	14,399	2,321	0	12,079	19.0

- ‘공유재산임대료’의 세입결손 발생 주된 원인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장 대부료 수납 지연에 따른 것이나, 2020년 1월 납부를 완료하였는바, 적기 세입 징수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③ 공유재산 매각수입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결산액은 예산현액(4,730억원) 대비 6.3% 징수된 230억원으로 전년 결산액(499억원) 대비 53.9%(269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4,43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징수율 (C/A)
세외수입	640,701	223,113	197,343	862	24,909	30.8
임시적세외수입	582,317	153,662	140,051	862	12,750	24.1
재산매각수입	472,986	31,941	29,975	0	1,967	6.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72,986	31,941	29,975	0	1,967	6.3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세수결손 발생 주된 원인은,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매각(예산현액 4,007억원) 불발에 따른 것임.
 -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매각(4,007억원)보류 및 고덕강일택지지구(68억원)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110억원) 구간의 중복편입된 사유지 협의지연
- 한편, 2019년도 재산매각수입 세입예산 편성액은 5,150억원이었으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부지(강남구 삼성동 171, 171-1, 31,543㎡) 중 일부 (7,000㎡, 22.2%)를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잔여 매각부지 (24,543.9㎡, 77.8%) 면적에 비례하여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감액 편성(2019.6.)한 것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400,691	△114,270	△22.2

※ 기정예산은 최종(2016년 11월) 감정평가액: 936,292백만원의 55%

- 다만,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회 의결 시 매각 절차상 당해 연도 내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재산매각수입 전액을 감액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한바 있음.
- 그러나 재무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또다시 매각 불발로 인한 막대한 세입결손을 유발하였는바, 재무국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하겠음.

※ 2020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매각에 대한 재산매각수입 미편성

④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및 세입 미편성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¹⁾」에 따라 발생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누적되는 세입예산 과목으로,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액은 예산현액(20억원) 대비 70.1% 징수된 14억원 으로 6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지난연도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40,701	223,113	197,343	862	24,909	30.8
임시적세외수입	582,317	153,662	140,051	862	12,750	24.1
지난연도수입	1,976	12,489	1,386	862	10,241	70.1

1)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또한 징수결정액(125억원) 대비 징수율은 2017년 49.6%, 2018년 39.0%, 2019년 11.1%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바, 부과 후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확행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 등 지난연도수입 세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	12,489	1,387	11.1	9,377	3,658	39.0	32,563	16,148	49.6
공유재산 임대료	5,597	346	6.2	159	72	45.3	655	92	14.0
기타사용료	562	45	8.0	2,020	1,569	77.7	810	240	29.6
기타수수료	0	0	0.0	0	0	0.0	4	0	0.0
기타사업수입	0	0	0.0	0	0	0.0	79	53	67.1
기타이자수입	0	0	0.0	0	0	0.0	5	2	40.0
자치단체긴부담금	0	0	0.0	0	0	0.0	2	2	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19	842	82.6	1,875	1,710	91.2	1,798	1,632	90.8
과징금	0	0	0.0	0	0	0.0	33	7	21.2
변상금	4,511	57	1.3	4,773	146	3.1	5,968	345	5.8
위약금	342	3	0.9	11	0	0.0	13	0	0.0
과태료	0	0	0.0	0	0	0.0	815	89	10.9
시도비반환금수입	0	0	0.0	0	0	0.0	17,990	12,610	70.1
불용품매각대	0	0	0.0	0	0	0.0	1	0	0.0
채납처분수입	13	0	0.0	24	11	45.8	24	0	0.0
그외수입	445	94	21.1	515	150	29.1	4,366	1,076	24.6

- 한편, 재무국 부서별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관리 실태를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C)	차액 (D=C-A)
합계	1,976,322	12,489,596	1,386,764	-589,558
재무과	-	346,642	2,824	2,824
자산관리과	1,898,205	11,812,928	1,290,308	-607,897
세제과	-	117,170	1,988	1,988
세무과	78,117	162,437	72,814	-5,303
38세금징수과	-	50,419	18,830	18,830

※ 또한, 38세금징수과 그외수입 102,940천원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되었음,

- 재무국의 세외수입은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30.8%에 그쳐 세입 결손액이 4,434억원(69.2%)에 달하고 있는바, 세입의 결손은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 하는바, 재무국은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 및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라.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 종합적으로,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세목의 경우는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획기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취득세(130.8%)', '변상금(132.6%)'과 같이 과다하게 징수되었거나, '자동차세(83.0%)', '공유재산임대료(19.0%)', '공유재산매각수입(6.3%)', 세외 수입 지난연도수입(70.1%) 등과 같이 과소 징수된 예산과목 경우는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크게 침해하여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공유재산매각수입금(△4,430억원)'과 같은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5,254억 1천 9백 만원) 대비 98.4%(2조 4,851억 9천 5백만원)를 집행하여, 불용률은 1.6%(403억 5천 1백만원)로 전년(6.4%) 대비 4.8% 감소한 수준임.

가.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 재무국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통계목간)은 3건에 18억 7,874만원임.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사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집행잔액	승인일자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19,810		-392	519,418	24,252 (4.8%)	'19.3.22
		성과상여금 (303-02)	20,614	392		21,006	26 (0.2%)	
2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19,418		-116	519,302	24,252 (4.8%)	'19.3.28
		성과상여금 (303-02)	21,006	116		21,122	26 (0.2%)	
3	인력 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19,302		-1,371	517,931	24,252 (4.8%)	'19.11.25
		직급보조비 (204-02)	17,991	1,371		19,362	33 (0.2%)	

- 2019년 3월 예산전용은 2건에 5억 8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2019년 지급 기준액이 상승하여 1회에 3억 9천 2백만원을 전용하고, 일부 누락된 자료 발생으로 2회에 추가로 1억 1천 6백만원을 전용 집행 하였음.
- 2019년 11월 예산전용은 1건에 13억 7천 1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직급보조비'으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편성 후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액이 인상(19.1.8 공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현원 증가(173명)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전용 사용하였음.

○ 2019회계연도 재무국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47억 6천 1백만원임.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금액		불용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7,931	△4,755		24,252 (4.8%)	'19.12.16
		101-02 기타직보수	91,455		4,755	734 (0.8)	
2	상시세금납부 체제구축	201-02 공공운영비	57	△6		22 (44.3%)	'19.12.18
		201-01 사무관리비	39		6	0 (0.1%)	

○ 재무과 예산변경사용은 1건에 47억 5천 5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기타직보수'로 변경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보다 현원의 증가로 예산액 부족분이 발생되어 변경 사용한 것임.

< 기타직보수 대상 변경 내역 >

구 분	편성기준 인원(A)	현 원(B)	증감인원(A-B)
총 계	1,638	1,757	119
개방형직위	36	53	17
일반임기제	733	752	19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377	430	53
청원경찰	341	376	35
전공의	8	6	△2
기타교육직	80	80	-
공채임용대기자	63	60	△3

○ 세무과 예산변경은 1건에 650만원으로, 서울시모바일세금납부시스템 (STAX)을 통한 세금 납부시 발생하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통한 세금납부 건수의 증가로 인해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되어 변경 사용하였음.

<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사업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편의점 수납수수료 37,000건 * 100원 = 3,700천원
		○ 본인인증 250,000건 * 52원 = 13,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지로, 신용카드 납부 225,000건 * 100원 = 22,500천원
	증감사유	
	휴대폰납부 등 수수료가 없는 매체로의 시민 납부 증가로 편의점 납부 수수료 감소	

-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시 직원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5,131억원)으로, 예산 전용 및 변경(총 4건)을 통하여 66억 6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도 242억 5천 2백만원(4.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성과상여금’은 3월 22일 3억 9천 2백만원을 전용하였음에도, 3월 28일 1억 1천 6백만원을 전용하는 등 같은 예산을 2회에 걸쳐 증액 전용(5억 8백만원)하고도 2천 6백만원(0.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직급보조비’는 예산(13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전용 집행하고도 3천 3백만원 (0.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또한, ‘기타직 보수(임기제)’는 예산변경(47억 5천 5백만원)으로 증액 집행하고도 7억 3천 4백만원(0.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을 빈번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는 요소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인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통합인건비 집행 상세내역 (2019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734,935	700,259	34,676	95.2
보수(일반직)	513,176	488,924	24,252	95.2
기타직 보수(임기제)	96,211	95,477	734	99.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065	75,434	9,631	88.6
직급보조비	19,362	19,329	33	99.8
성과상여금	21,122	21,096	26	99.8

<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사업 예산 집행 내역 >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179	156	22	87.6
사무관리비	46	46	0	99.9
공공운영비	50	28	22	55.7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3	83	0	100.0

○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 재무국에서는 ‘인력운영비’를 한해에 4번에 걸쳐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하여 마치 예비비와 같이 활용 하고 있는바,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에 재무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임.

나. 20% 이상 불용(통계목별)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재무국은 세출예산 결산 결과 403억 5천 1백만원(예산현액 2조 5,254억 1천 9백만원 대비 1.6%)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2017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 금	11,250	7,290	3,960	35.2%	결산 감사위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예비 지급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 템 구축	사무관리 비	1,200	-	1,200	100.0%	기존 etax 시스템 통합추진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불 용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 템 구축	전산개발 비	335,307	-	335,307	100.0%	기존 etax 시스템 통합추진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불 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연금지급 금	4,395,151	1,665,795	2,729,356	62.1%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인원수 감소 (실제 예상 494명 → 232명)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 료 납부	사무관리 비	116,190	90,070	26,120	22.5%	나라장터 계약건수 (당초예상 4,723건 → 실제 3,959건)으 로 감소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서울계약미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공공운영 비	107,413	83,820	23,593	22.0%	계약미당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13,176,046	488,923,622	24,252,424	4.7%	인사이동 등 현원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 근로자보 수	85,065,031	75,433,749	9,631,282	11.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직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 직급별 호봉별 세밀한 급여 편성이 어려워 공무원 통상 임금표의 평균 월급여액으로 편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 비	1,474,350	549,164	925,186	62.8%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 서울의료원 매각 시기 조정 및 대규모 매각수수료 감소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 수 납세조합 보조	기타보상 금	546,930	227,106	319,824	58.5%	2019년 징수교부율 하향조정(5% → 2%)에 따른 집행 저조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공공운영 비	56,550	27,895	22,155	39.2%	19.1월부터 시금고 변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etax 문자수수료 시금고에서 경비부담
시세 세원발굴 지원	포상금	130,000	101,872	28,128	21.6%	불복절차 종료 이후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징수 후 실제 지 급 시까지 차이가 발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 템 운영	사무관리 비	1,050	0	1,050	100.0%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2회유찰로 수의계약에 따른 제안서평가회 미실시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 전방안 컨설팅	연구운영 비	664,088	0	664,088	100.0%	행안부 지방세입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울시 자체시스 템 구축 여부 검토 중에 따라 사업연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 비	3,000	1,800	1,200	40.0%	세외수입유지보수사업 2회유찰되어 제안서평가회 연기(12 월 말 실시)로 회계 마감 : 2020년 초 지출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 금	30,000	7,191	22,809	76.0%	신고포상금 대상자 미달

○ 재무국의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346억 7천 6백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27억 2천 9백만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9억 9천 1백만원),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 방안 컨설팅’(6억 6천 4백만원), ‘수입증지 및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3억 3천 7백만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3억 2천만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1억 7천 1백만원),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1억 1천 1백만원),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1억 1백만원) 등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9개 사업의 불용액은 401억원으로 총 불용액(403억 5천 1백만원)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형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고액 예산편성 사업 100% 불용

- 한편, ‘수입증지 및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3억 3천 7백만원),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6억 6천 4백만원) 사업의 경우는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 재무국은 불용사유로 계획변경, 사업연기를 들고 있으나, 이는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다른 긴급한 필요 사업에 예산을 적기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무국의 각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0% 불용 사업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337	-	337	100.0%	기존 etax 시스템 통합추진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전액불용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664	0	664	100.0%	행안부 지방세입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울시 지체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중에 따라 사업연기

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과다 불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7,349억원의 예산현액 중 347억원 (4.8%)을 불용처리 하였음.
- ※ 통합인건비 불용액 346억 7천 6백만원 중 69.9%는 242억 5천 2백만원은 통계목 ‘보수’에서, 27.8%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발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2019년도 인력운영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	불용	불용률
	합계	734,935	700,259	34,676	4.8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513,176	488,924	24,252	4.8
	기타직보수	96,211	95,477	734	0.8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065	75,434	9,631	11.4
	성과상여금	19,362	19,329	33	0.2
	직급보조비	21,122	21,096	26	0.2

○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편성 당시의 현원과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인사이동, 휴직·복직·퇴직 등으로 인한 근무자 수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4.8%)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직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 직급별 호봉별 세밀한 급여 편성이 어려워 공무원 통상 임금표의 평균 월급여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337억원, 2017년 333억원, 2018년 439억원, 2019년 439억원 등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인력 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살펴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 불용 현황 >

(단위 : 천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18			2017			2016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710,652	43,911	6.2	676,515	33,343	4.9	648,430	33,733	5.2
보수	505,485	28,183	5.6	472,853	7,048	1.5	455,500	6,046	1.3
기타직 보수	93,249	3,836	4.1	89,049	5,452	6.1	79,736	2,512	3.2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9,174	7,325	10.6	70,540	17,586	24.9	71,798	23,569	32.8
직급 보조비	24,902	4,555	18.3	18,091	403	2.2	17,435	405	2.3
성과 상여금	17,842	12	0.1	25,982	2,854	11	23,961	1,201	5

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사업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22억 4천 7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247,130	(x-) 2,247,130	(x-) 2,419,349	(x-) 172,219	(x-) 7
출연금	(x-) 2,247,130	(x-) 2,247,130	(x-) 2,419,349	(x-) 172,219	(x-) 7

-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688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에서 출연한 금액은 141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4%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국(A)	68,756	3,940	4,597	6,587	7,712	7,136	8,276	7,570	12,102	10,844
서울시전체 (B=C+D)	16,797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시본청(C)	14,051	795	953	955	1,975	1,446	1,636	0	4,044	2,247
자치구(D)	2,74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3
시본청 비율 (C×100)	20.4	20.2	20.7	14.5	25.6	20.3	19.8	0.0	33.4	20.7
서울시 전체 비율 (B/A×100)	24.4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 결산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법령 개정 노력 등이 부족한 사유로, 2020년 출연 관련 출연 동의안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

○ 다만, 본 출연금은 지방세 관계법령²⁾에서 정한 일정비율(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로 산출하는 것으로, 매년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출연금 산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은 서울특별시세 중 법정 특정 용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정해진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세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추가 특별시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원(「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제8조)으로서 보통세(법 제7조제2항)이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서울특별시로 규정(법 제9조제3항)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이 세목에 대하여도 출연 대상 세목으로 포함하여 출연하고 있음.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재산세는 시·군·구세이며 보통세임(법 제7조제2항)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서울특별시세이나, 재산세가 보통세이므로 출연금 산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개발법령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는바, 사실상 목적세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회계 전출 근거 법령 >

교부대상	재원	비율	교부 근거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정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촉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교부대상	재원	비율	교부 근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연구원 설립 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4억원 규모임.

〈연도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출연금 산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산정액	94	141	148	149	157	164	174	186	202
합 계	941,501	941,501	986,173	992,908	1,046,763	1,095,848	1,162,446	1,242,059	1,345,506
현년도	928,021	928,021	971,206	976,890	1,029,961	1,077,531	1,139,913	1,223,780	1,328,324
과년도	13,480	13,480	14,967	16,018	16,802	18,317	22,533	18,279	17,182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1년부터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어 2012년분부터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

○ 연구원의 사업운영 경비와 무관하게 법령으로 출연 규모를 과다하게 정해 놓고, 출연금을 연구원 본래 목적사업에도 없는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출연률 인하(법 시행령 개정)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 타 법령에 의해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기 출연한 출연금의 환수와 함께 향후 출연금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출연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은 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 징수로 인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자 평가를 통해 자치구에 인센티브로써 매년 50억원의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000,000	(x-) 5,000,000	(x-) 5,000,000	(x-) 0	(x-) 0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	(x-) 5,000,000	(x-) 5,000,000	(x-) 5,000,000	(x-) 0	(x-) 0

※ 포상금 1억원 별도 교부

- 본 사업은 시 세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을 모든 자치구에 고르게 나누어 차등 배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본 사업운영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규모 및 지속 유지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음.

〈市 세입분야 평가결과 자치구별 지원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자치구	합계	2020년도 (2019회계연도)	2019년도 (2018회계연도)	2018년도 (2017회계연도)
계	15,000	5,000	5,000	5,000
종 로 구	631	229	195	207
중 구	465	157	155	153
용 산 구	631	167	277	187
성 동 구	529	184	100	245
광 진 구	773	295	236	242
동 대 문 구	629	185	222	222
중 량 구	698	237	255	206
성 북 구	641	307	222	112
강 북 구	450	37	206	207
도 봉 구	617	120	275	222
노 원 구	335	160	0	175
은 평 구	546	209	210	127
서 대 문 구	656	213	225	218
마 포 구	750	307	221	222
양 천 구	390	137	206	47
강 서 구	678	187	222	269
구 로 구	367	220	100	47
금 천 구	390	137	35	218
영 등 포 구	627	129	252	246
동 작 구	930	307	322	301
관 약 구	795	242	272	281
서 초 구	481	190	122	169
강 남 구	559	163	142	254
송 파 구	710	222	287	201
강 동 구	720	257	241	222

○ 따라서, 사업 운영 방식으로 볼 때,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으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